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1132호 2015. 11. 17.(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4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5-54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
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6
- 인천광역시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5-55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5-1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34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5-172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35외 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램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5-11-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29-2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95번안길 35 (당하동)	2008-12-31	고산후로95번의 안쪽으로 분기된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651-4	인천광역시 서구 보듬로 184 (오류동)	2012-10-25	"가슴에 불도록 안다" 라는 순우리말에서 착안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981-66	인천광역시 서구 보석로11번길 11 (경서동)	2013-07-30	보석로 시작지점부터 약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565-11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11번길 2 (석남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003-6	인천광역시 서구 이화로26번길 17 (경서동)	2012-10-25	이화로 시작지점부터 2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80-16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51번길 9 (당하동, 미르팰리스)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5-17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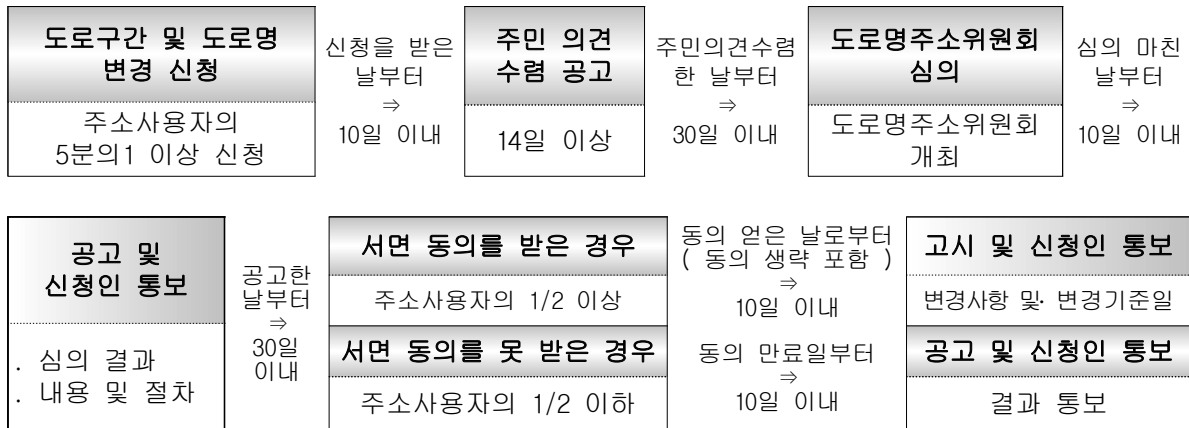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3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15. 11. 13.
2. 고시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붙임 조서와 같음)
4. 도로명의 변경 요건 및 절차



※ 도로명 변경은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새주소팀(☎032-560-48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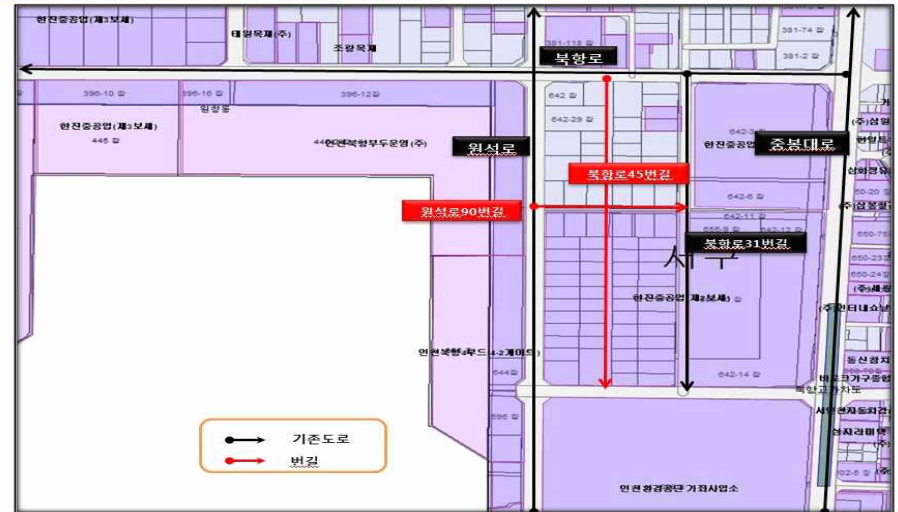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 조서

연번	도로 구분	예비도로명	기 점		종 점		제 원		기초간격 (m)	관할 행정구역	도로명 부여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길이(m)	폭(m)			
1	로	보도진로 (구간연장)	가좌동	600	가좌동	173-116	1.190	20	20	가좌1동	인천교가 생기기 전 이 부근에 있던 보도진 나루의 이름을 따서 명명 보도진 나루란 물이 빠질때 걸어서 건널 수 있는 나루라는 뜻
2	길	보도진로73번길	가좌동	173-185	가좌동	173-474	329	8.3	20	가좌1동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3	길	북향로45번길	석남동	641-1	석남동	647	835	11.61	20	석남2동	북향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4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4	길	원석로90번길	석남동	654	석남동	655-5	291	20	20	석남2동	원석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9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도로

보도진로 도로명 부여(안)



북향 도로명 부여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 2015 - 174호

지적재조사사업 대행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곡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조사 등 대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지적측량수행자 명칭 : 대한지적공사 인천광역시본부 북부지사
2. 사 업 지 구 명칭 : 대곡2지구
3. 사업위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서구 대곡동 127번지 일원
(615필지/ 1,355,721㎡)
4. 대 행 업 무 :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조사 등
5.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
(☎ 032-560-46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5 - 54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보 건 소 장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1호서식, 별지2호서식 변경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4) 또는 Fax (560-280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정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2호의 규정에 의한”을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으로, “각호의”를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으로, “각호의 서식에 의하되”를 “각 호의 서식

에 따르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의료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을 “구 보건의료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수탁신청서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
위탁받고자 하는 업	무		
<p>「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 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를 수탁하고자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대행의료업무			
<p>「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p> <p>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p>			
구비서류 :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 위탁및대행에관한조례시행규칙</u></p>	<p><u>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u>인천광역시 서구보건의료사업의업무위탁및 대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u> ----- .</p>
<p>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①<u>영 제22호의 규정</u>에 의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u>각호</u>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p>	<p>제3조(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의 신청) ① 「<u>지역보건법 시행령</u>」 제22조에 따른 ----- <u>각 호</u> 의 ----- .</p>
<p>1. (생 략) 2. 면허·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u>제2조</u> 규정에 의 하여 보건소장이 면허 또는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p>	<p>1. (현행과 같음) 2. ----- <u>제2조에 따라</u> -----</p>
<p>3. 업무수탁 또는 업무대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보유확인</p>	<p>3. -----</p>

<p>에는 계약해지일 <u>2월</u> 전까지 해지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업무대행자가 다음 <u>각호의 1에</u>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u>관계법령</u> 및 조례 또는 이 규칙에 <u>의한</u>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p> <p>4. 5. (생략)</p>	<p>----- <u>2개월</u> -----</p> <p>-----</p> <p>-----.</p> <p>②-----</p> <p>-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관계 법령</u> -----</p> <p>--- <u>따른</u> -----</p> <p>4. 5. (현행과 같음)</p>
---	--

□ 관계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공고 제2015 - 55호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부과·징수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지역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보 건 소 장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위반자에대한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3호, 제5호, 제7호, 제8호서식 변경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기간 정비(30일→60일)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3. 의견 제출

-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560-5014) 또는 Fax(560-2800)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서구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안) 1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 현행 자치법규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

3. 주요내용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는 별지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서식 변경
-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과태료처분 이의신청 기간 정비(30일 → 60일)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개정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를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로 한다.

제2조 중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를 “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 “기준에 의한다”를 “기준을 따른다”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을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로, “의거”를 “따라”로, “과태료처분대상자”를 “과태료처분 대상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을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제2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2조에 따라”로,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를 “부과할 때는 해당”으로, “과태료부과징수결정”을

“과태료부과 징수결정”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발부일로부터”를 “발부일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15일간의”를 “15일 간의”로,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를 “따라 발부·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날로부터 30일”을 “날부터 60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7조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6조에 따른”으로,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를 “인천광역시 서구”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에 이를”을 “을”로 한다.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7호서식, 별지 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 표 】

■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합병전의 처분은 양도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내 용	관련법규	처 분 기 준		
		1차	2차	3차
1.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 제18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지역보건법」 제21조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 제21조 및 제26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처 분 사 전 통 지 서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6. 의견 제출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모사전송	
	기 한	년 월 일			시까지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뒷면]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인천광역시 서구보건소 보건행정팀 전화 560-501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 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	기 관 명			
	성 명		생년월일	
	소 재 지		전화번호	
납 부 통지서번호				
금 액		당초납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기에 년 월 일까지 은행에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수 신 : 지방법원장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6조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처분을 한바, 본인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분에 대한	성 명		생년월일	
이의제기자	주 소			
부과내역	납 부 통지일자		금 액	원
	부과관청		이의제기일자	
처분내역 및 불복사유	처분사유			
	본인의 불복사유			
<p>붙임 1)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 사본 1부.</p> <p>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사본 1부. 끝.</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 서구청장</p>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 ----- -----.</p>
<p>제2조(부과대상자)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제2조(부과대상자) ----- 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p>
<p>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p>	<p>제3조(과태료부과 기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기준을 따른다.</p>
<p>제4조(의견제출) 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의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p>	<p>제4조(의견제출) -----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 ----- 따라 ----- ----- 과태료처분 대상자-- ----- 또는 정보통신망에 따른 ----- -----.</p>

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구청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위반사실, 과태료금액,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명시하여 과태료 부과징수결정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첨부하여 통지한다.

②과태료의 납부기한은 처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이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0일 이내의 기간 안에 15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 통지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피처분

-----.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 ①-----
--- 제2조에 따라 -----
----- 부과할
때는 해당 -----

과태료부과 징수결정 -----
-----.
----- 따라 -----
-----.

②-----
----- 발부일부터 -----
-----.

----- 15일 간의 -----

따라 발부·통지하여야 -----.

③-----

----- 따라 -----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강제징수)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인천광역시서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 이를 준용한다.

-----.

제6조(이의신청) ①제5조에 따른 -----

----- 날부터 60일 -----
----- 따라 -----
-----.

②제1항에 따라 -----
----- 지체 없이 -----
----- 따 -----
----- 라 -----
-----.

제7조(강제징수) -----
----- 제6조에 따 -----
----- 른 -----
----- 제5조제2항에 따 -----
----- 른 -----
----- 따라 -----.

제8조(과태료의 귀속) -----
----- 인천광역시 서구 -----
-----.

제10조(준용규정) ----- 따 ----- 른 -----

----- 을 -----.

□ 관계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지원할 수 있다.

□ 관계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5-1575호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고자 함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2. 주요 개정내용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명문화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2. 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인재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404-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

☎ 032-560-5762, FAX 032-560-2716]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 개정이유

-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투명성 제고를 위해,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고,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를 명문화하고자 함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라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 “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 신설
-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 명문화
-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개선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관련법 개정 등에 따른 일부 조문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췌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로 하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를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중 “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하고, “구 예산중”을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으로 하며, “매회계년도”를 “**회계연도**”으로 하고, “0.5%이상”을 “**0.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비중”을 “경비 중”로 하고, “호와 같다”를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 중 “보조대상사업”을 “보조사업 대상”로 하고,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을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으로 하고,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할 수 없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 중 “통할”를 “총괄”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교육여건개선 방안 강구”을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으로 하며, 제

2호 “교육여건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계획 심의”을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교육여건개선사업”을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 하며,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은 서면으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중전의 제2항)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를 삭제한다.

제8조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작성 비치하여야”를 “**작성 · 비치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4. 그 밖의 사항

제9조제1항 중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 제2호”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제2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고, “대상사업”을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며, “확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여하여 사업대상”을 “**확정하고,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고, “대상학교”를 “**해당 학교**”로 한다.

제10조 제2항 중 “대상”을 “**해당**”으로 하고, “사업계획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를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다.**”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후”를 “**신청서 등을 검토후**”로 하고, “대상학교”를 “**해당 학교**”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과”로 하고,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을 “조례」를”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인천광역시서구교육경비보조에 관한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u>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보조기준액) <u>구청장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재원을 구 예산중 일반회계로 충당하며, 보조기준액은 매회계년도 자체세입액의 0.5%이상</u> 보조한다.</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u>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u></p>	<p><u>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u>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u>」 제11조제6항 및 「<u>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u>」에 따라 ----- -----<u>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u>----- ----- ----- ----- -----.</p> <p>제2조(보조기준액) <u>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 중 ----- 회계년도-----0.5퍼센트 이상 -----.</u></p> <p>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 ----- <u>경비 중</u>----- -----</p>

각 호와 같다.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 학교의 냉·난방시설 사업
- 3.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 4. 지역사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과정의 자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5.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대상사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회 위원 중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

-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 2.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 3.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 4.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 6.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각급학교의 보조사업 대상-----인천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임명 또는 위촉한다.

임할 수 없다.

1. (생략)

2. 인천광역시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 2명

3. 인천광역시 서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기타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서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자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명

3. 구에 연고가 있는 교육공무원 : 2명

4. 그 밖에 학교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구에 연고가 있으며, 교육사업에 열의를 가진 사람

② -----
-----위원 중 -----.

③ -----

-----전임자 임기의 남은 -----.

④ -----
-----1명 -----
-----.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이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여건개선 방안 강구
2. 교육여건개선 경비보조금 신청사업계획 심의
가. (생략)
나. 당해 년도 교육여건개선사업 결정
다.·라. (생략)
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생략)
<신설>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총괄,-----

-----.

제7조(기능) -----다음 각
호의 -----.

1. 교육여건 개선방안 강구
2. 교육여건 개선 경비보조금 신청 사업계획 심의
가. (현행과 같음)
나. 해당 ----교육여건 개선사업 결정
다.·라.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는 매년 예산집행 시에

레」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사업계
획서 등을 작성하여 매년 8월말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②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교육
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 부의하
여 제7조 제2호의 절차를 이행
한다.

제10조(교부방법) ① 구청장은 심
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사업이 결
정되면 보조금을 확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부여하
여 사업대상 및 교부결정 금액
을 명시한 교부결정서를 대상학
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대상 학교의 장은 보조금 교
부 확정 통보에 따라 사업계획
서와 함께 보조금 신청서에 의
거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다.

③구청장은 보조대상학교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후 보조금을 대상학교에 교
부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및 제2항에 따
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
원회에 부의하여 제7조제2호 -
-----.

제10조(교부방법) ① -----
위원회-----보조사업 대
상이-----확정하고, 보
조사업 대상-----
-----해당 학교
-----.

②해당-----
-----구청장에
게 보조금을 신청한다.

③-----
-----신청서 등을 검토 후 --
---해당 학교에-----.

제11조(보조금의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1. ~ 4. (생략)
-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 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사실확인) 구청장은 보조 받은 학교가 당초 계획에 의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대한 제재) -----
-----각 호의
어느 하나-----

- 1. ~ 4. (현행과 같음)
- 5. -----따른-----

제12조(준용) -----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
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과 -----
-----조례」를 -----

제14조(사실확인) -----
-----따라
